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군계획시설
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3.6.21)에 따라 복개된 우수시설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지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 1) 그 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
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 녹지

등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 분양·임대·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편익시설에서 제외

나. 허용대상 편익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 정비(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허용 가능한 편익시설의 요건으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등의 시설이 아닐 것을 추가

다. 개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이 있고 해당 법령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

라. 도시철도부대사업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안 제22조제2호)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국가철도와 동일하게 부대사업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마. 환승센터의 결정기준 규정(안 제3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7.18)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추가된 환승센터에 대하여 상위 분류체계인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중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추가

바. 유원지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1항제3호)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 분양·임대·회원제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사. 인용조문 정비(안 제58조제5항)

2010. 3. 1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삭제된 제58조제1항제4호·5호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아. 우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9조제2호)

우수지를 복개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우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문 정비

자. 우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안 제119조제3의2호나목)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우수지에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4. 12. 4. ~ 2025. 1. 13.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를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의 시설

나. 이 규칙에서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따로 정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주거용 시설, 분양·임대·회원제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제외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제3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를 “차고지,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센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복합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센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을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분양·임대·회원제시설은 제외)·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소속”으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에게”로, “제64조제2항제3호, 제101조제3항”을 “제64

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4호 · 제5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권자”를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권자”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편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나. 관리사무소 · 창고 · 매표소 · 안내소 · 조명시설 · 급수시설 · 배수시설 · 방수시설 · 각종 표지판 · 쓰레기장 · 주차장 · 휴게실 · 탈의실 · 욕실 · 화장실

제10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를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4)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를 각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군계획시설 내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 ----- ----- -----.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우수지를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 -----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신 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충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수

<신 설>

<신 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나.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의 시설

나. 이 규칙에서 각 도시·군 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따로 정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주거용 시설, 분양·임대·회원제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제외한다.)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3. 삭 제

4. (생 략)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22조(철도)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4. (현행과 같음)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
-----.

- 1.-----

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
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가. ~ 라. (생략)

마.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 (생략)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략)

②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 차고지, 복합
환승센터 및 환승센터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센터

2. (현행과 같음)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1. (생략)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마목·차목

·과목(골프연습장에 한정

한다)·더목 및 러목(안마

시설소에 한정한다)의 시

설

다. ~ 카.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 카. (현행과 같음)

3. 제1호-----

-----.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
준) ① (생 략)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
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
야 한다.

1. 2. (생 략)

3. 휴양시설 : 휴게실 · 놀이동산
· 낚시터 · 숙박시설 · 야영장
(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 ·
야유회장 · 청소년수련시설 ·
자연휴양림 · 간이취사시설

4. 5. (생 략)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
외한다)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 차목(동물병원, 동물미
용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
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휴게실 · 놀이동산
· 낚시터 · 숙박시설(분양 · 임
대 · 회원제시설은 제외) · 야
영장-----

4. 5. (현행과 같음)

6. -----
<삭 제>

<삭 제>

한 것에 한정한다) · 하목
(금융업소에 한정한다) ·
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
에 한정한다)의 시설

다. ~ 아. (생략)

7. (생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 · 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결
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
한다. 이하 제64조제2항제3호,
제101조제3항 및 제119조제2
호나목4)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 ④ (생략)

⑤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
 는 제1항제4호 · 제5호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

 ----- 도시 · 군계획시설 결
정권자 소속 -----
 ----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권자에게 -----
 ----- 제64조제2항제3호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항-----
 -----.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같은 호 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다목·라목·바목부터 자목까지·카목·타목·과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하목·너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권자 -----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

<삭제>

<삭제>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
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하
다)·라목·바목·카목(직업
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
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
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생략)

② (생략)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생략)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
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
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

<삭제>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삭제>

<삭제>

<u>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 라목 · 바목 · 파목(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u> 3. ~ 8. (생략)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 라목 · 바목 · 아목 · 자목 ·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 8. (생략) ② (생략)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① ----- ----- --. <삭 제> <삭 제>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	---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생략)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창고 · 매표소 · 안내소 · 조명시설 · 급수시설 · 배수시설 · 방수시설 · 각종 표지판 · 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 · 휴게실 · 매점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탈의실 · 욕실 · 화장실

3. ~ 5. (생략)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 라목 · 바목 · 아목 · 자목

2. -----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리사무소 · 창고 · 매표소 · 안내소 · 조명시설 · 급수시설 · 배수시설 · 방수시설 · 각종 표지판 · 쓰레기장 · 주차장 · 휴게실 · 탈의실 · 욕실 · 화장실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② -----
편익시설-----

--.

<삭 제>

<삭 제>

·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 8. (생략)

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3.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

3. ~ 8. (현행과 같음)

<삭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④·⑤ (생략)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생략)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 라목 · 바목 · 아목 · 카목
(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 파
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
의 시설

3. ~ 8. (생략)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삭제>

<삭제>

3. ~ 8. (현행과 같음)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삭 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삭 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삭 제>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② (현행과 같음)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4. (생 략)

③ (생 략)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삭 제>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 3) (생략)
- 4)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관리하는 경우로서 ---.

가. -----

경우로서 -----

나. -----

- 1) ~ 3) (현행과 같음)

4)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

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에서 1)부터 3)까지의 요
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
는 도시·군계획시설결
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
로 본다.

3. (생 략)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
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
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
할 것

가.·나. (생 략)

<신 설>

4.·5. (생 략)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

3. (현행과 같음)

3의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5. (현행과 같음)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 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 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 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4. (생 략) 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